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

”

산업분류	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
1. 제조업	500명 이하
2. 광업 3. 건설업 4. 운수업 5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300명 이하
9. 도매 및 소매업 10.숙박 및 음식점업 11.금융 및 보험업 12.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200명 이하
13.그 밖의 업종	100명 이하

-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**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**
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

-위에 따른 **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**
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